- ○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」제5조
- ○「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제8조
- 4. 2018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 계획안: 따로 붙임

##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1407 제출연월일: 2017. 11. 10. 제 출 자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#### 1. 개정이유

- 가. 상위법인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 따라 문화재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삭제 및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한 추가 경감율을 조례로 정 하도록 한 부분을 명시하고,
- 나. 사업기반 성숙 및 안정화 등으로 감면목적이 달성된 울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규정 삭제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문화재에 대한 감면적용기한 삭제 및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한 추가 경감율 명시로 조항 신설(안 제3조)
- 나. 감면목적 사업의 달성에 따른 감면 폐지
  - 사업기반 성숙 및 안정화 등으로 감면목적이 달성된 울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규정을 삭제(안 제5조)

### 3. 근거법규

- 가.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55조
- 나. 「항만공사법」 제8조
- 4. 개정조례안 및 신・구조문대비표: 따로 붙임
- 5. 참고사항
  - 가. 예산조치 사항: 해당없음
  - 나. 규제사무 심의: 해당없음
  - 다. 성별영향분석평가: 해당없음
  - 라. 입법예고: 2017. 9. 18. ~ 2017. 11. 6.(의견없음)

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901호

##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
  - 분) 중 "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"를 "면제한다"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 - ②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.

제5조를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8. 1. 1.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 $\circ$ } 제3조(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) 제3조(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) ① --「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」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 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(「지 방세법」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)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-----면제한다. 면제한다. <신 설> 한다.

제5조(울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) ① <삭 제> 「항만공사법」에 따라 설립된 울산 항만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 하는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해서는 재 산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100분 의 50을 경감한다.

② 울산항만공사가 「국유재산법」 에 따른 현물출자로 인한 출자증가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면

②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 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

제하고, 과세기준일 현재 항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「지방세법」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을 경감한다

# 근 거 법 규

###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

- 제55조(문화재에 대한 감면) ① 「문화재보호법」에 따라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(소유자가 사용·수익하는 사적지는 제외한다)에 대해서는 재산세(「지방세법」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)를 면제한다. 다만,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.
  - ② 「문화재보호법」에 따른 문화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.
  - 1. 「문화재보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(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)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(「지방세법」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를 면제하고,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보호구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.

2. 「문화재보호법」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

#### 「항만공사법」

제8조(사업)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<개정 2012.6.1.>

- 1. 「항만법」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(외곽시설·임항교통시설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은 제외한다)의 신설·개축·유지·보수 및 준설(浚渫) 등에 관한 공사의 시행 및 항만의 경비·보안·화물관리·여객터미널 등 항만 의 관리·우영에 관한 사업
- 2. 「항만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의 조성 및 관리·운영에 관한 사업
- 2의2. 「항만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
- 2의3. 「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의 조성사업
- 3. 「물류정책기본법」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물류시설운영업
- 4. 항만의 조성 및 관리·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 탁받은 사업
- 5. 제1호, 제2호, 제2호의2, 제2호의3,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에 관한 조사·연구,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업
- 6. 항만구역 외에서 항만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근린생활시설 및 복리시설 등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
- 7. 그 밖에 외국 항만의 조성 및 관리·운영 등 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- 8. 제1호, 제2호, 제2호의2, 제2호의3, 제3호,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의 직접시행이나 출자 또는 출연